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소령 별표 3의3)

<2018.12.31.까지 적용>

구 분	의 무 발 급 업 종
1.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업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삭제, 2014.2.21.) ☞ 도선사업 삭제됨 거. 측량사업 너. 공인노무사업
2. 보 건 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일반의원 바. 기타의원 사. 치과의원 아. 한의원 자. 수의업
3. 숙 박 및 음식점업	가. 일반유희 주점업(단란주점영업 포함) 나. 무도유희 주점업 다.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4. 교육서비스업	가. 일반 교육 학원 나. 예술 학원 다. 운전학원
5. 그 밖의 업종	가. 골프장 운영업 나.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장의 관련 서비스업은 2015.5.1.부터 시행) 다. 예식장업 라.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마. 산후조리원 바.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사. 피부미용업 아.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자. 실내건축 및 건축사무리 공사업(도매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인물사진 및 행사용 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한다) 카.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타. 의류 임대업 파. 이사회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구 분	의 무 발 급 업 종
2015.5.1.부터 적용	하.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거. 자동차 종합 수리업 너. 자동차 전문 수리업 다. 전세버스 운송업
2016.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러. 가구 소매업 머.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버. 의료용 기구 소매업 서. 페인트, 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어. 안경 소매업
2017.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2017.2.3. 개정)	저. 출장 음식 서비스업 치.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키.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터. 스포츠 교육기관 퍼.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2019.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2018.2.13. 개정)	히.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고.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을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으로 확대 노. 기타미용업(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도.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로. 운송장비 소매업 모. 골프연습장 운영업

<2019.1.1.부터 시행>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종을 재분류하여 20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 3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구 분	업 종
1.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업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삭 제(2014.2.21.) 거. 측량사업 너. 공인노무사업
2. 보건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2018.2.13. 신설)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2018.2.13. 개정)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2018.2.13. 개정) 아. 치과의원 (2018.2.13. 개정) 자. 한의원 (2018.2.13. 개정) 차. 수의업 (2018.2.13. 개정)
3.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일반유숙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업업을 포함한다) 나. 부도유숙 주점업 다.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2018.2.13. 개정) 라. 출장 음식 서비스업 (2017.2.3. 신설)
4. 교육 서비스업 (2018.2.13. 개정)	가. 일반 교습 학원 나. 예술 학원 다.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라. 운전학원 마.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사.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가. 골프장 운영업 나. 골프 연습장 운영업 다.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라. 예식장업 마.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바.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사. 산후 조리원 아.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자. 피부 미용업 차.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카.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타.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파.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너. 의류 임대업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러.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머. 자동차 종합 수리업 버. 자동차 전문 수리업 서. 전세버스 운송업 어. 가구 소매업 저.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차. 의약품 기구 소매업 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터.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거울 및 액자(내용물 없는 것) 소매업, 주방용 유리제품 소매업, 관상용 어항 소매업으로 한정한다] 퍼.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허.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고.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노.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증개업 도. 약기 소매업 로.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5. 그 밖의 업종 (2018.2.13. 개정)	